

업무교류협약서

(사)경기도물산업협회와 그린어게인 조직위원회(이하 “양 기관” 이라 한다)는 경기도 환경산업 활성화 및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 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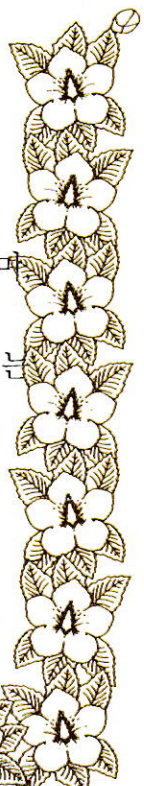
본 협약은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동 사업을 개발하고, 기술 개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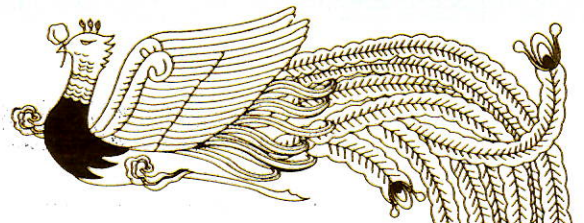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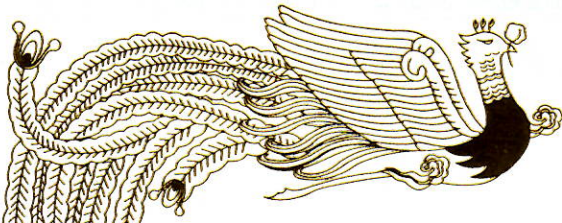
제2조 (협력 범위)

- 가. 환경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/정책 개선 등을 위한 공동활동
- 나. 환경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,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사업
- 다. 환경산업 기술개발 및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상호지원 및 협력
- 라. 양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
- 마. 경기도 환경산업 및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
- 바. 기타 경기도 환경과 관련된 사업

제3조 (협력 기간 및 해지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기본 3년간 유효하며, 협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 단, 각 기관의 법적위상이 변하거나, 일방의 명시적인 해지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지 할 수 있다.





제4조 (협약 이행)

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한다.

제5조 (협약 변경)

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이 모두 합의하여 조정한다.

제6조 (비밀 유지)

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주요 정보는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.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다.

제7조 (기타)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12. 21.



(사)경기도물산업협회
회 장 오 창 용



그린어게인 조직위원회
위원장 박 경 복

